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88
----------	------

발의연월일 : 2020. 11. 26.

발 의 자 : 임이자 · 김정재 · 김영식  
金炳旭 · 송언석 · 김성원  
강기윤 · 한무경 · 이명수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으로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녹색금융을 국제 금융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관련 원칙적인 사항(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정책 추진 근거로는 미약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그간 녹색금융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녹색투자에 소극적이었고, 기업에 대한 투자 시 환경성을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환경성 평가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

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녹색금융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녹색경제 구현 등을 위한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녹색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공
2. 금융기관 등이 투자결정을 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문 책임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환경책임투자를 위한 표준 평가체계 구축·운영, 평가 및 금융기관 등 지원

2. 환경책임투자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⑥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0조의4(녹색금융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녹색경제 구현 등을 위한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녹색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공</li> <li>2. 금융기관 등이 투자결정을 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문 책임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지원</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lt;신 설&gt;</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p>

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환경책임투자를 위한 표준 평가체계 구축·운영, 평가 및 금융기관 등 지원
2. 환경책임투자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⑥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